

변경대비표

[집합투자규약]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NH-Amundi 러-브 증권투자신탁 3 호[주식]
2. 효력발생일 : 2021 년 10 월 21 일
3. 정정사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변경 시 손해배상 조항 문구 반영 등)
4. 정정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종의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종의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u>예탁결제원</u> 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u>예탁결제원</u> 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u>예탁결제원</u> 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u>예탁결제원</u> 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u>예탁결제원</u> 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u>전자증권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u> 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u>전자등록기관</u> 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u>전자등록기관</u> 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u>전자등록기관</u> 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u>전자등록기관</u> 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

	<p>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p>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p> <p>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p> <p>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u>한국예탁결제원</u>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종류 및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p>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p> <p>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p> <p>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u>전자등록기관</u>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종류 및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제15조(자산운용지시 등)	<p>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u>그 투자신탁재산으로</u>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u>그 투자신탁재산을</u>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제 19 조(운용 및 투자 제한)	<p>②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p> <p>1~2. (생략)</p> <p><신설></p>	<p>②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p> <p>1~2. (현행과 동일)</p> <p>3. <u>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으로 정하는 때</u></p>
제35조(상환금 등의 지급)	<p>①~② (생략)</p> <p>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u>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①~② (현행과 동일)</p> <p>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u>전자등록기관</u>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p>①~③ (생략)</p> <p><신설></p>	<p>①~③ (현행과 동일)</p> <p>④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1항에 따라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u>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을</u>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p> <p>1.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 액: 신탁계약에서 정한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집합투자업자 혹은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전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65일 동안 매일을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365일로</p>

		<p>나눔 금액)에 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기간 동안 보수율이 변경된 경우 수익자총회 개최 직전일의 보수율을 적용한다.</p> <p>2. 보상기간: 365일 (다만,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변경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p> <p>3. 지급시기: 변경일 전일</p>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p>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u>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u>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p>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u>직접 또는 전자우편</u>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⑧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전자등록기관</u>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u>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u>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⑧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전자등록기관</u>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부칙	-	(변경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변경대비표

[투자설명서]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NH-Amundi 러-브 증권투자신탁 3 호[주식]
2. 효력발생일 : 2021 년 10 월 21 일
3. 정정사유 :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 변동성(표준편차) 변경 반영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25.63%→24.86%, 1 등급→ 2 등급)
 -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변경 시 손해배상 조항 문구 반영,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 등)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21.05.07) 반영

4. 정정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요약정보>	NH-Amundi자산운용(주)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NH-Amundi자산운용(주)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요약정보]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 운용전문인력	<신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단위: 천원)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의 '총보수 및 비용' 추가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 천원)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
제1부.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신설>	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제2부. 5. 운용전문인력	-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2. 금전의 차입 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2. 금전의 차입 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현행과 동일) (3)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으로 정하는 때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	특히, 상기 3, 4 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기 3, 4 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1 개월 이내에 해지, 합

		병 및 모자형 전환 중 처리방안을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2부. 10.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수익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u>25.63%</u> 로 6등급 중 <u>1등급</u> 에 해당되는 <u>매우 높은 위험</u> 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수익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u>24.86%</u> 로 6등급 중 <u>2등급</u> 에 해당되는 <u>높은 위험</u> 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2부. 12.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상장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증권시장을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장내파생상품 및 해외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상장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증권시장을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u>해외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u>) - 장내파생상품 및 해외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 (<u>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u>)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결산일 및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
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생략) - 수익자 총회의 소집통지는 <u>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u>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신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현행과 동일)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u>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u>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u>전자등록기관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그 수익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내야 합니다.</u>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신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현행과 동일) * 집합투자규약 제44조제2항 및 제3항 이외

		<p>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44조제1항에 따라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을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p> <p>1.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액: 신탁계약에서 정한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집합투자업자 혹은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전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65일 동안 매일을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365일로 나눈 금액)에 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탁계약기간 동안 보수율이 변경된 경우 수익자총회 개최 직전일의 보수율을 적용합니다.</p> <p>2. 보상기간: 365일 (다만,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변경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p> <p>3. 지급시기: 변경일 전일</p>
<p>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p>	<p>나. 임의해지</p> <p>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p> <p>(생략)</p> <p><신설></p> <p>※ <u>집합투자업자가 (3) 및 (4)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u>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공시하거나 <u>예탁결제원을 통하여</u>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p>	<p>나. 임의해지</p> <p>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p> <p>(현행과 동일)</p> <p>※ <u>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의 합병,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전환, 투자신탁의 존속 등 이 투자신탁의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u></p> <p>※ <u>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u>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공시하거나 <u>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u>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p>
<p>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p>	<p>(2) 자산운용보고서</p> <p>-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p>	<p>(2) 자산운용보고서</p> <p>-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p>

	<p>매한 판매회사 또는 <u>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p>	<p>매한 판매회사 또는 <u>전자등록기관</u>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u>전자통신의</u>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p>
	<p>(3) 자산보관. 관리보고서 -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u>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p>	<p>(3) 자산보관. 관리보고서 - <u>신탁업자</u>는 <u>수익자에게</u>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u>전자등록기관</u>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p>

변경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NH-Amundi 러-브 증권투자신탁 3 호[주식]
2. 효력발생일 : 2021 년 10 월 21 일
3. 정정사유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운용현황 및 운용실적 갱신
 - 변동성(표준편차) 변경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25.63%→24.86%, 1 등급→ 2 등급)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21.05.07) 반영
4. 정정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요약정보>	NH-Amundi자산운용(주)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NH-Amundi자산운용(주)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요약정보]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 운용전문인력	<신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 기간별 총비용 예시(단위: 천원)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의 '총 보수 및 비용' 추가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 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 천원)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